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565,300,000	46,959,000
일반회계	1,423,200,000	42,696,000
특별회계	142,100,000	4,263,000
공기업특별회계	90,912,813	2,727,38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107,302	1,743,21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1,914,096	957,42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91,415	26,742
기타특별회계	51, 187, 187	1,535,616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77,726	20,33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756,697	232,701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특별회계	8,891,000	266,730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5,641,037	169,231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5,002,010	150,06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515,303	105,459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0,191	3,00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07,400	63,222
주차장특별회계	6,150,192	184,5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55,085	4,653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45,356	40,361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54,230	34,627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0,056	1,202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63,352	7,901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6,399	3,792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8,261,153	247,835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598,637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 6,998,637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500,000천원, 내부유보금 100,000천원)
-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4,1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원금상환과 금리변동 등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 ③ 동일부서·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 ④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 세출예산 보조재원 약칭어 설명〉

보조금		자체재원
국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사제세건
 ❖ 국 : 국고보조금 ❖ 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기 : 기금(중앙정부) 보조금 ❖ 특 : 특별교부세 	❖ 도 : 도비(도기금) 보조금❖ 조 : 특별조정교부금	❖ 시 : 시 자체재원 ❖ 채 : 지방채